

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30 증권투자신탁(제1호) [채권]

2. 변경내용

- 운용역 변경
- 운용보고서 발송방법 변경, 이익분배조항 및 해지사유 변경

3. 대비표

- 집합투자규약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
제 33 조(이익분배)	① (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① (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제 45 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	① (생략) 1~2. (생략) 3. <u>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</u> ②~③ (생략) ④ <u>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(이하생략)</u>	① (현행과 같음) 1~2. (현행과 같음) 3. <u>설정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4. <u>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(현행과 같음)</u>
제 50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①~⑥ (생략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서면으로</u> 우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. ⑧~⑩ (생략)	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</u>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<u>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u> ⑧~⑩ (현행과 같음)

부 칙	(신 설)	1.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2. 운용보고서 발송방법 변경, 이익분배조항 및 해지사유 변경
-----	-------	---

- 투자설명서/간이투자설명서

구 분	현 행	변 경(안)														
제 2 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<변경전> (2008년 12월 31일 기준)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현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른운용 자산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홍장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1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 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,921 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홍장희	1971	차장	15 개	5,921 억	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
	성명	생년			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
		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											
홍장희	1971	차장	15 개	5,921 억	-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- 채권운용 4년											
<변경후> (2011년 4월 4일 기준)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명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년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직위</th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현황</th> <th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요운용경력 및 이력</th> </tr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른운용 자산규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나권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6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성명	생년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나권진	1969	이사	-	-	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	
성명	생년				직위	운용현황		주요운용경력 및 이력								
		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	다른운용 자산규모													
나권진	1969	이사	-	-	- 연세대학원 경제학 석사 - 채권운용 8년											
제 2 부 10. 다. 기타투자위험/집 합투자기구 해지위험	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<u>100 억원에</u>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	1 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액이 <u>50 억원에</u>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														
제 2 부 14. 가. 이익배분	(1) (생략) <신 설>	(1) (현행과 같음) <u>다만,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														
제 5 부 2. 나. 임의해지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</u>	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<u>설정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/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u>														
제 5 부 3.	(2) 자산운용보고서	(2) 자산운용보고서														

<p>가. 정기보고서</p>	<p>(생략) <u>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(현행과 같음)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u></p>
<p>제 5 부 3. 나. 수시공시</p>	<p>(2)수시공시 <신설></p>	<p>(2)수시공시 8) <u>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 9) <u>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u></p>